

(별지 제1호 서식)

# 감사보고서

교육부 장관 귀하  
학교법인 우일학원 이사회 귀중

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에 의하여, 학교법인 우일학원(안양대학교)의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,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

감사결과 다음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교법인 우일학원(안양대학교)의 재산상황·회계와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.

다음 : 지적사항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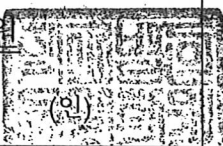

구 분	재산·회계감사 지적사항		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(건)	비고 <지적사항 없는 경우 :지적사항없음(표기)>
	건수	금 액		
1. 법인 일반업무 관련	-	-	-	지적사항 없음
2. 법인 수익사업 관련	-	-	-	지적사항 없음
3. 학교 관련	-	-	-	지적사항 없음
4. 부속병원 관련	-	-	-	-
계	-	-	-	-

- 붙임 : 1. 학교법인 우일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(별지 제1의1호 서식)  
 2. 안양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(별지 제1의2호 서식)  
 3.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

2018년 4월 27 일

학교법인 우일학원  
 감사 조철연   
 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 2310 호)  
 감사 김영근 

※ 공인회계사를 선임한 대학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기재

피감사 기관장 2018년 4월 27일 <u>학교법인 우일학원</u> 이사장 김광태 	피감사 기관장 2018년 4월 27일 <u>안양대학교</u> 총장 유석성 
--	---

교 육 부 장관 귀하  
학 교 법 인 이 사 회 귀중

# 監 査 報 告 書

2017회계연도 ( 2017년 3월 1일부터  
2018년 2월 28일까지 )

붙 임

1. 법인 감사보고서(일반업무회계/수익사업회계)
2. 대학교 감사보고서(교비회계)

- 감사보고서(별지9호서식)의 피감사자(입회인) 서명  
날인은 법인 : 사무국장, 학교 : 재무처장, 부속병원 :  
경리부장 등 재정부처 책임자 또는 피감사기관장(법인 :  
이사장, 대학교 : 총장)으로 할 수 있음.
- 결산감사 후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계획(별지 제9호서식의 1호)은  
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 별지 제1의 1호 및 2호 서식을  
붙임으로 갈음함.

학교법인 우일학원

안양대학교

# 감 사 보 고 서

## 학교법인 우일학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우일학원의 2017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18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, 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
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우일학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,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우일학원의 2018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2018년 4월 27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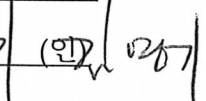
학교법인 우일학원

감사 조철연 (인) 

감사 김명근 (인) 

피감사자(입회인)

직명 법무국장

성명 김명기 (인) 

※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할 것

(법인 일반업무회계·수익사업회계)

(별지 제1의1호 서식)

학교법인 우일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

(회계연도 :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)

- 지적사항(내용) : 법인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 구분 표시

감사결과 지적사항(내용)	피감사 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
<p>(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)</p>	

피감사기관장 학교법인 우일학원 이사장 김 광 태



(법인 일반업무회계·수익사업회계)  
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(별지 제9호 서식)

# 감 사 보 고 서

## 학교법인 우일학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대학교의 2018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, 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 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

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안양대학교의 2018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2018년 4월 27일


학교법인 우일학원

감 사 조철연 (인) 

감 사 김영근 (인) 

피감사자(입회인)

직 명 부총장

성 명 정은구 

※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할 것

(교비회계)  
(별지 제1의2호 서식)

**안양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**  
(회계연도 :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)

- 지적사항(내용) : 교비회계

감사결과 지적사항(내용)	피감사 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
지적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

(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)

피감사기관장 안양대학교 총장 유 석 성



*유석성*